

## 인공수정료 지원

### 1. 목적

-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와 송아지생산 유도로 한우사육기반 유지
- 인공수정지원으로 자연종부 억제 및 한우개량기반 구축과 우량비육 밀소 생산으로 한우고급육생산 확대

### 2. 추진방향

-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 암소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
- 인공수정료지원으로 생산된 송아지의 혈통등록 활성화

### 3. 2001년도 세부사업 추진요령

#### 가. 사업개요

#### (1) 추진배경

- 한우사육두수 감소와 소규모 부업한우농가의 암소사육 포기 및 자연종부 방지를 위하여 인공수정료 지원으로 번식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한우 송아지생산 의욕 고취

#### (2) 사업내용

- 지원대상가축 :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암소
  - 보조금 지급 대상자 : 당해 암소를 인공수정 한 개업 인공수정사, 지역축협 소속 인공수정사, 자가인공수정 농가
- 지원단가(인공수정료 보조) : 축산발전기금 10천원, 지방비 10천원
  - 단, 안정제가입암소를 자가인공수정시 두당 3회까지 정액대 기금보조 지원조건
    - 농가 지원은 암소당 매년 1회 수정에 한하여 지급(단, 년초에 수정료가 지급된 암소가 송아지 생산이후 년말에 수정할 경우는 수정료 지급하고, 년말에 수정된 암소가 다음연도에 재발정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)
    - 인공수정사는 농가에 인공수정한 후 두당 인공수정료에서 인공수정료 지원금액(기금보조 10천원+지방비 보조)을 차감한 금액만 농가로부터 수취
    - 인공수정료가 20천원이하인 경우는 축산발전기금에서 10천원, 차액은 지방비로 지원
    - 인공수정료가 20천원이상인 경우는 축산발전기금에서 10천원, 지방비 10천원, 차액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지원

## 나. 추진체계

### (1) 사업총괄기관 : 농림부(축산정책과)

- 주관기관 : 시·군·구
- 사업시행기관 : 농협중앙회, 지역조합(울릉농협)
  - 협조기관 : 시·도, (사)전국한우협회, (사)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

### (2) 사업담당기관

- 농림부(축산정책과) : 전화 02/500-1894~5
- 농협중앙회(송아지생산안정사업팀) : 전화 02/397-7024~6
- 시·도(시·군·구) : 축산(농정, 농산물유통)과, 축산계
- 지역축협

### (3) 인공수정료 지원절차

- ① 인공수정사는 인공수정한 후 축주가 확인한 『인공수정확인서』(서식 2)를 첨부한 『인공수정료 지급신청서』(서식 1)를 매월 5일까지 관할 지역축협에 제출
  - ※ 자가인공수정 농가는 <서식 3>에 의하여 자가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신청서를 지역축협에 분기별로 신청
- ② 지역축협은 <서식 4>의 『인공수정료 및 정액대 자금(배정)신청서』를 매월 10일까지 시·군·구(이하 시·군이라함) 및 지역본부에 기금 및 지방비 보조금 한도배정요청<서식 4>
- ③ 농협지역본부는 매월 15일까지 지역축협의 자료에 의거 농협중앙본부에 인공수정료 기금보조금 한도배정 신청
- ④ 농협중앙본부는 매월 20일까지 각도별(지역본부별) 기금 한도액 배정을 농림부에 신청
- ⑤ 지역축협으로 부터 자금신청 요청을 받은 시·군은 익월 10일까지 지방비 보조금을 조합에 전금
- ⑥ 농협중앙본부는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의 기금보조금 한도액배정에 의하여 지역본부를 통하여 지역축협에 신청자금 전금
- ⑦ 지역축협은 인공수정사에게 계좌입금한 후 <서식 5>에 의한 인공수정사별 {인공수정료 지원실적} 및 <서식 6>에 의한 {자가인공수정농가 정액대 지원실적}을 시·군에 통보

## 다. 행정사항

(1) 농협중앙회 송아지생산안정사업팀은 기운영중인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인테넷 전산관리프로그램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관리프로그램을 보완·개발하여 운영

(2) 인공수정료 지원소요예산 확보

- 시·군은 6월말까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암소를 기준으로 하여 연말까지 인공수정 예상두수와 소요예산 확보계획을 시·도를 통하여 7.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<서식7>

○ 농림부는 시·도(시·군)의 신청에 의거 인공수정료 소요예산액을 확보하고 확정내역을 시·도에 시달

### (3) 한우 인공수정료지원계획 홍보

○ 시·군은 인공수정료 보조금 지급계획을 시·군 및 지역축협의 게시판에 공고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, 지역축협과 민간인 수정사를 연계하여 인공수정지원 사업 추진체계 구축

○ 지역축협은 농가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여부를 민간 수정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(가입현황 대장비치 등)

### (4) 사후관리

○ 시·군에서는 인공수정료지원 이전(2001.7.1일이전)에 농가로부터 받고 있는 수정료를 수정사별로 조사관리하여 인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

○ 인공수정료 인상요인이 발생시에는 시·군이 검토하여 인상을 등을 조정하고 정부지침에 위배하여 인공수정료를 인상하는 수정사는 정책사업 참여 배제

○ 시·군 및 조합합동으로 매분기별 인공수정료 지원실태를 점검하여 부정지급사례 사전 방지하고, 위반사례 발견시 인공수정료 지원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인공수정료 지원대상에서 제외

○ 지역축협은 『인공수정료 지원실적』대장을 작성·편철 보관<서식 5> 참조

○ 시·도는 붙임<서식 8>에 의거 연도말 인공수정료지원 실적을 익년 1월말까지 보고

